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94

발의연월일: 2021. 4. 20.

발 의 자: 민홍철·김민철·김윤덕

송갑석 · 송옥주 · 이상헌

이형석 · 임종성 · 전재수

조승래 · 홍성국 · 김정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,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 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).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의 제목 중 "결격사유"를 "결격사유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육군·해군·공군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4조의2의 제목 중 "결격사유"를 "결격사유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육군·해군·공군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 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

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3(사관후보생의 <u>결격사</u>	제11조의3(사관후보생의 <u>결격사</u>
<u>유</u>) (생 략)	<u>유 등</u>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
	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육군·해군·공군은 사관후
	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
	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
	<u>둘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
	의 장은 사관후보생이 교육기
	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
	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
	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관
	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. 이
	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
	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14조의2(준사관후보생 및 부사	제14조의2(준사관후보생 및 부사
관후보생의 <u>결격사유</u>) (생 략)	관후보생의 <u>결격사유 등</u>) <u>①</u>
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육군・해군・공군은 준사관
	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에게
	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
	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.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. 이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